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3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 김소희·박정하·김위상

김선교 • 김상훈 • 김상욱

한지아 • 박덕흠 • 김예지

이만희 · 김승수 · 이종배

김대식 · 김정재 · 조은희

유용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.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,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.

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,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.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,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 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6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의6제1항 중 "예방"을 "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"으로, "학교폭력 업무 등을"을 "이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제1항의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6(학교전담경찰관) ① 국	제20조의6(학교전담경찰관) ①
가는 학교폭력 <u>예방</u> 및 근절을	<u>및</u> 학교 내에서
위하여 <u>학교폭력 업무 등을</u> 전	<u>발생하는 범죄의 예방</u>
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.	<u>이를</u>
<u> <신 설></u>	②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학교에는 제1항의 경찰
	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
	<u>다</u> 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